

사무위임전결규정

제정 1983.12.26	규정 제 6호	2000. 7.25	규정 제318호
개정 1990. 5. 4	규정 제 89호	2000.11.27	규정 제334호
1992.11.24	규정 제130호	2001. 4.23	규정 제350호
1993.11. 9	규정 제150호	2001. 9.10	규정 제372호
1994.12.31	규정 제183호	2001.10.29	규정 제378호
1996. 5.14	규정 제201호	2002. 7.29	규정 제403호
1997. 1.15	규정 제226호	2002.12.31	규정 제420호
1997. 6. 3	규정 제233호	2003. 5.22	규정 제428호
1997. 9.27	규정 제246호	2004.11.15	규정 제486호
1998. 2.13	규정 제268호	2005. 5.20	규정 제500호
1999. 4. 9	규정 제280호	2005.10.21	규정 제513호
1999. 8.20	규정 제289호	2016.11. 4	규정 제831호
1999. 8.20	규정 제3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본부장, 처(실·원)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99.4.9, 2001.4.23, 2003.5.22, 2005.10.21)

1. 이사장 결재사항

-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 나. 새로운 정책과 기본방향의 의사결정
- 다.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 라. 비안전분야 신규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본호신설 2016.11.4]

2. 본부장 결재사항

- 가. 이사장 결재사항의 기본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나.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방향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라. 처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 마. 비안전분야 갱신 외주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본호신설 2016.11.4]

3. 처장 결재사항

-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총괄
- 나. 처별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 라.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4. 팀원 결재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의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 통지 업무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연구·조사

다.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② 이사장, 감사, 본부장, 처장 등의 전결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세부적인 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이사장 : 5/100 내외

2. 본부장(감사포함) : 15/100 내외

3. 처장이하 : 80/100 내외

제5조(중요사항의 처리 <2005.5.20>) 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급직위자가 특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결사항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직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중요사항, 일반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의 구분은 경미한 사항의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직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항신설 2005.5.20)

제6조(합의사항) 전결사항이 타부서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필하여야 하며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2005.10.21)

1. 본부장, 감사의 전결사항은 상위직위

2. 처장이하의 전결사항은 처장이 지명한 자

제8조(전결사항 보고)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집행사항을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이사장에 종합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업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5.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1.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93.1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2.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5.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6.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9.4.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4.23>

부 칙('99.8.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9.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5.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5.10.21 삭제